

1. 개정 이유

호텔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평가지표 및 등급 결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1회 평가로 호텔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야영장 이용자의 야영 편의를 위해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화재 안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텔업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등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에 따른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기준이성급별로 상이(총 4개,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하여 호텔업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에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 등급결정 보류를 받고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여야 했으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1회 평가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동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야영장 전기사용량 기준 완화(안 [별표 7])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600와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력사용 공간범위를 천막 안을 포함한 기본시설로 명확히 하고 전력사용량을 1,100와트 이하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 ④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7 제1호나목 중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 [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를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을 포함한 기본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에서는 총 사용량이 1,100와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화기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을 포함한 기본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에서는 총 사용량이 1,100와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라.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삭제 <2019. 3. 4.>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아.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자.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 6. (생략)